

『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이영실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
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간접흡연은 흡연과 마찬가지로 암, 호흡기질환을 일으키
고 특히 영유아와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, 이러
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는 금연구역을
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먼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또한,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이러한 이유로 조례안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”로 변경하고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합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”로 변경하고,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하였습니다.
-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

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
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
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
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